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8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12347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음 담당변호사 조나원
피고, 피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5가소311404 판결
변 론 종 결 2026. 5. 15.
판 결 선 고 2026.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공기순환장치 및 액세서리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온라인 마켓 B2C 판매대행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3. 5. 30. 'D'라는 제목의 편집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E일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23. 10. 10. 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저작물 캡처 사진 17장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고 게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검찰은 2025. 4. 29.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성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점, 제품 설명 등록과 관련된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25년 형제638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복사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 원고의 저



작인격권, 복제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위반 주장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으나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 주장을 인정하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저작물은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D'(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소개와 광고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인 점, 이 사건 저작물은 여러 개의 이미지를 분류, 선택, 배열하여 조합한 편집저작물로 각각의 이미지마다 이 사건 제품의 각도, 배열, 소품, 문구 등을 표현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이 사건 저작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저작물은 궁극적으로 이 사건 제품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고 판매하는데 활용되어야 하는 자료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실제로 판매한 이력은 없어 보이고, 원고의 문제 제기 이후 이 사건 저작물을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100,000원으로 정한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 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5. 6.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11. 1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신영희

판사 정인재